창의역량개발센터 운영규정

제 정 2019. 03.

제1조(명칭) 본 센터는 우송대학교(이하 '대학'이라 한다) 창의역량개발센터(이하 '센터'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임무) 센터는 대학 재학생의 전공특성화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지원 및 운영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능) 센터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 시행 및 분석
2.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3.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점검 및 평가
4. 단과대학 운영 지원 및 관리
5. 교육성과 자체분석 및 환류 개선 지원
6. 그 밖의 학생 학습역량 지원 및 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

제5조(센터장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대학의 교직원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사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,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6조(조직) ①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센터장, 주임교수, 연구위원, 연구원, 연구보조원, 조교, 행정인턴을 둘 수 있다.

② 센터에 일반직원을 둘 수 있으며 제반업무를 수행한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의역량개발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9명 이내로 구성하되, 센터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을 당연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센터장의 추전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규정·내규·지침 등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3. 전공특성화 학습역량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4. 전공특성화 학습역량 프로그램 담당 주임교수 및 연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
5. 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점검에 관한 사항
6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제8조(기타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